

2024

통권 24-2호

예산·정책 이슈

Budet-Policy Issue



이번달 주제 : 학술연구용역 예산

- 1 학술연구용역 개념 및 계획
- 2 학술연구용역 심의 · 의결
- 3 학술연구용역 결과 평가 · 공개 · 활용
- 4 타 시도 학술 · 기술용역 사전심의 운영 비교
- 5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현황 및 예산 심의 활용 포인트
- 6 학술연구용역 예산 관련 타 시도 의회 언론보도

정책 동향

- 1 (기경위)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 2 (행문위) 관광산업 혁신을 이끄는 10대 미래 유망관광기술
- 3 (복환위) 새로운 관점으로 하수처리장 들여다보기
- 4 (농수해위) 농업인력 부족과 대응 :
 - ① 여성농업인 확대를 위한 과제
- 5 (건소위) 소방차 화재진압시 불법 주 · 정차 차량 강제처분제도의 한계와 향후 과제
- 6 (교육위)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교육부)

충청남도 및 교육청 주요 정책 이슈

- 1 (행문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현황
- 2 (농수해위) 충남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
- 3 (교육위) 2024년도 충남형 늘봄학교 운영

세입징수 실적

- 1 국 세
- 2 도 세
- 3 시군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I. 이번달 주제

학술연구용역 예산

학술연구용역 개념 및 계획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추진 지침]

1 개념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 학술·연구·조사·검사·평가·개발 등을 통한 도정정책 개발, 제도개선, 시책자문 등에 제공되는 용역

2 용역의 종류

[참고] 용역의 종류 비교

구분	학술용역	기술용역		일반용역
		기술	정보통신	
정의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한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 되는 용역	사업이나 시설물의 설계, 감리 등 건설 기술 관련 업무 또는 엔지니어링 활동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는 용역	정보전략계획의 수립, 소프트웨어의 개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환경의 구축,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정보 통신의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정보화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는 사업	학술용역, 기술용역 및 정보통신 용역 이외의 용역 ※컨설팅, 단순 조사·통계, 자료 수집 등은 일반용역으로 진행
목적	주요 정책 수립 및 현안 문제의 효과적 추진에 기여	전문기술이 필요한 건설 공사의 완수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	관련 사업 완수
대상	사업계획 단계에서 광범위하고 심도 깊게 분석되어야 할 도정 시책	공사를 전제로한 사업·시설물의 설계, 조사, 감리 등		시설물관리, 청소, 경비, 소프트웨어 분야 행사 대행, 의료서비스, 교육, 건설폐기물 분야 등 투자출연기관 평가, 책임운영기관 평가 등 단순평가용역
수행기관	학술연구기관	토목건축, 조경 업체 등	정보통신 업체 등	분야별 업체

3 학술연구용역의 필요성·타당성 등 검토

-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해 학술연구용역 해당 여부, 용역 필요성, 과업 내용 및 용역의 성격 등 검토
- 운영비 및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운영비 및 수익 예상 산출액 검토
 - ※ 학술연구용역은 학술연구용역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예산 편성 가능

4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용역 사례 검토

- 최근 5년간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등 다양한 포털사이트를 통해 발주부서에서 유사 용역사례 시행여부 검토 후 용역발주 계획서 제출
 - ※ 유사 용역이 이미 수행되었으나 해당 분야 이론 및 기술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

5 연구 수행방식(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 검토

- (원칙) 당초 연구목적대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는 “공동연구형”의무화(’19년 2회 추경 편성 대상 용역부터)
- (예외) 공무원이 참여하기 어려운 연구일 경우는 위탁형으로 연구 추진
 - 위탁형의 경우에도 담당 공무원이 용역 진행 상황 모니터링 등 참여

[참고] 연구 수행방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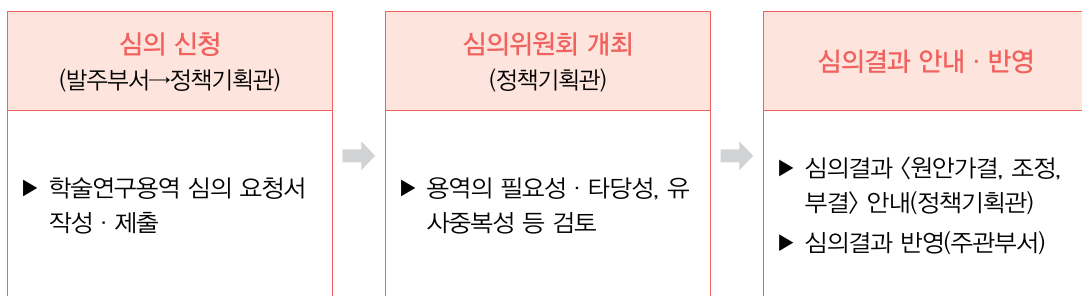
구분	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
연구방식	연구자의 단독 연구	연구자와 공무원의 지속적 토론을 통한 공동 연구	연구자의 단독 연구
연구결과	각 기관의 서식에 맞춰 작성된 종합 보고서	종합보고서·업무보고서 (업무계획, 진단보고서, 매뉴얼 등)	연구자의 의견·아이디어가 정리된 약식 보고서
대가지급	인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지급	인건비, 최소한의 경비 지급 ※ 공무원에게는 지급 불가	인건비, 최소한의 경비 지급

I. 이번달 주제

학술연구용역 예산

학술연구용역 심의·의결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추진 지침]



□ 심의대상

- 사업부서의 학술연구용역비(207-01) 및 정책기획관 도정정책 학술연구용역비(pool)로 추진하는 사업
 - 총괄부서(정책기획관)에서「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구성·운영

□ 심의 제외대상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제3조 제2항)

- 예산 편성목“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 행정안전부장관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으로 정하는 기술용역
-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 천재지변, 법정전염병 등 긴급한 도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 1천만 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반복 시행하는 용역*

* 1년 단위로 반복 시행하는 용역을 제외하고는 2년 이상의 주기로 반복 시행하는 용역은 심의대상임

□ 재심의 대상

- 위원회에서 재검토 후 상정토록 결정한 용역의 경우
- 용역비가 당초보다 금액이 30%이상 증가한 경우
- 용역계획이 당초 심의 받는 내용과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
- 심의·의결을 받은 후 미추진한 지 2년 이상 경과한 용역을 재추진할 경우
- 용역기간이 당초보다 50% 이상 늘어나는 경우

□ 심의 신청(용역 수행부서 → 정책기획관 공문 요청)

- **심의요청서 구비서류** : 사전검토서, 중복성·차별성 검토서, 과업지시서, 원가계산서
 - － 사전검토서 : 2천만 원 이상 용역에 대하여 사전 자문 실시
- ※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되기 전 정책자문위원회 또는 부서 자체 자문계획에 따라 3인 이상의 전문가에게 사전 자문 실시(용역의 필요성, 유사중복 용역 여부,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예상 문제점 등)
 - － 중복성 검토보고서 : 도, 프리즘, 포털 등 유사용역 사례 확인 작성
 - － 차별성 검토보고서 : 최근 5년 이내 유사 용역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연구를 추진하려는 경우 작성
 - － 과업지시서 : 수행하고자 하는 과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 원가계산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산정

□ 총괄부서 검토(정책기획관)

- 용역의 내용 및 기간, 필요 서류 제출 여부 등 1차 검토
 - － 내용상 애매한 부분, 미충족 부분 보완 요청
- 신규 용역은 **필수 용역***을 제외하고 **부서 자체계획 수립**(전문가 자문 등) 또는 **충남연구원 활용**(현안과제, 전략과제, 도 정책과제 등) **권장**
- * 법령에서 필수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 갈등 요소가 있는 사업, 기타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

I. 이번달 주제

학술연구용역 예산

학술연구용역 결과 평가·공개·활용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추진 지침]

□ 용역결과 평가(「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제15조」)

- 용역 결과 평가 결과 미흡 또는 불량하다고 판단된 경우와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법령 등에서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불이익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개정 2023. 12. 29.>

- 제15조(용역 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 이상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연구용역평가서의 평가 결과가 미흡 또는 불량하다고 판단된 경우와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향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도지사는 위원회로부터 불이익조치를 취하도록 도지사에게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령 등에서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용역결과 공개**(「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제19조」)

- 용역 결과의 공동 활용을 위해 용역 완료 후 **지체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및 도 홈페이지(충남넷)에 성과품[최종보고서] 등 공개**

– 다만, 그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함

*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지는 경우 공개

□ **용역결과 활용**(「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제19조」)

- 공공부문 연구용역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용역 완료 후 **지체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도 홈페이지에 평가결과서, 활용상황 보고서 공개**

– (평가결과서)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공동 작성

* 도 정책자문위원, 출자출연기관 연구원, 대학교수 등 해당 분야 전문가 등

– (활용결과 보고서) 용역 결과의 도정 활용 현황(계획) 작성



▣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개정 2023. 12. 29.>

제19조(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종료일로부터 지체없이 용역 결과, 평가 결과, 활용상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결과의 일부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I. 이번달 주제

학술연구용역 예산

타시도 학술·기술용역 사전심의 운영 비교

□ 연구용역과 예산편성 전 사전심사

- 정책용역은 각 지방정부가 용역 관련 조례를 통해서 예산편성 사전에 정책연구/정책용역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사 절차를 거침
- 기술용역은 일반용역과 통합하여 운영 하는 경우(대구, 광주, 대전, 울산)에는 사전에 심사를 받고 있음
- 각 지방정부마다 예산편성 사전 이행해야 할 절차로서 '정책연구용역'(207-01)은 사전 심사를 받고 예산을 편성함. 하지만 전산개발비(207-02) 기술용역 등은 상대적으로 '예산편성 전 사전 심사'절차가 없는 자치단체가 9개임
-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기술용역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시설비통계목(401-01)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기술관련 기초조사, 사전타당성 조사 등이 "사전 심사 → 예산편성 요구 및 편성 → 예산심의 → 예산확정" 등과 같이 정책연구 용역(207-01)의 절차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음

구분	조례명	예산편성 전 심사	용역적용			심의 대상(천만원)		
			정책	기술	일반	정책	기술	일반
서울	서울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	-
	서울시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기준	○	-	○	-	-	1.5천	-
부산	부산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	○	-	-	1천	-	-
	부산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	-	○	-	-	1억	-
대구	대구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1천	3천	-
경기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모든	-	-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	○	-	-	1천	-	-
충남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	○	-	-	1천	-	-

※ 관련자료: 류춘호, 2020. 정책연구용역과 예산심사 통제전략

I. 이번달 주제

학술연구용역 예산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현황 및 예산 심의 활용 포인트

□ 2023년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예산편성액 10,646,082천원

–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용역은 3건으로 법령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반복시행하는 용역, 기술용역(타당성평가) 등으로 비대상에 해당함

(단위:천원)

연번	부서명	부기사업명	예산액	사전심의 여부
1	예산담당관	공공기관 운영관리	200,000	부
2	경제소상공과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용역	80,000	여
3	자치행정과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50,000	부
4	인사과	고객만족도 조사 등	4,447,082	부
5	미래성장과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	20,000	여
6	에너지과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연구	22,000	부
7	청년정책과	대학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50,000	여
8	공동체정책과	충남 행복한 마을관리소 운영체계 모델 연구용역	50,000	여
9	문화정책과	충남미술관 건립을 위한 소장품 조사 연구	140,000	여
10	문화정책과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검토를 위한 유물조사(2차)	250,000	여
11	문화유산과	보부상 공문제 복원 및 전승기반 구축 연구	60,000	여
12	체육진흥과	충남체육발전 중장기계획(2024~2028) 연구용역	80,000	여
13	관광진흥과	충남문화관광공사 운영방향 정립 및 수익사업 발굴 연구용역	100,000	여
14	관광진흥과	충남 방문의 해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50,000	여
15	충남도서관	충청남도 제2차 도서관 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	55,000	여

16	기후환경정책과	국가 탄소중립 도시 대응전략 및 지역별 조성방안 마련 연구용역	215,000	여
17	푸른하늘기획과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150,000	여
18	환경안전관리과	소음피해 주변지역 실태조사 및 협력방안 연구	225,000	여
19	물관리정책과	금강 물 환경 모니터링(3단계 3차년도)	287,000	여
20	물관리정책과	충청남도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수립 용역	130,000	여
21	건축도시과	제2차 충청남도 공사중단 방지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용역	70,000	여
22	교통정책과	시외버스 경영수지분석 용역	85,000	여
23	교통정책과	노선버스 운송손익분석 통합용역	270,000	여
24	교통정책과	충청남도 노선버스 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	400,000	여
25	교통정책과	KTX천안아산역 복합환승센터 타당성평가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	600,000	부
26	교통정책과	2023년 충청남도 택시운임요금 산정용역	120,000	여
27	도로철도항공과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전략수립 연구용역	180,000	여
28	도로철도항공과	제3차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30,000	여
29	혁신도시정책과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 및 자금지원 타당성 검토와 기준 마련 연구용역	80,000	여
30	혁신도시정책과	내포신도시 확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	350,000	여
31	해양정책과	서해안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 구축 연구용역	200,000	여
32	해양정책과	제2차 충청남도 마리나항만개발 종합계획 수립 용역	200,000	여
33	해운항만과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	300,000	여
34	수산자원과	천수만 대하자원의 효율적 이용방안 연구	100,000	여
35	어촌산업과	충남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용역	150,000	여
36	해양정책과	충남 해양쓰레기 분포현황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3차년도)	400,000	여
37	감염병연구부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250,000	여

※ 자료: 2023년도 예산안 자료요구 자료 中

Ⅰ 학술연구용역은 도정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여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해 연구·조사·개발 하는 행위를 말함. 도정 정책 추진시 사전에 시행되기 때문에 사전심의를 철저히 해야 함

- ❶ 학술연구용역이 반드시 필요한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지
- ❷ 기존에 유사 용역사례는 없는지, 타 시도 및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된 사례는 없는지

2 학술연구용역 심의회 통해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를 받아야 함

- ❶ 학술연구용역은 예산편성 전 학술연구용역심의회 심의·의결 이후 예산편성 가능
- ❷ 1년 단위로 반복 시행하는 용역은 제외하고, 2년 이상의 주기로 반복 시행하는 용역은 심의 대상임
- ❸ 재심의 대상임에도 재심의를 받지 않는 용역은 없는지

- 위원회에서 재검토 후 상정토록 결정한 용역의 경우
- 용역비가 당초보다 금액이 30%이상 증가한 경우
- 용역계획이 당초 심의 받는 내용과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
- 심의·의결을 받은 후 미추진한 지 2년 이상 경과한 용역을 재추진할 경우
- 용역기간이 당초보다 50%이상 늘어나는 경우

3 학술연구용역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용역 완료후 지체없이 공개 및 활용계획 등 마련되어야 함

- ❶ 용역완료후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도 홈페이지 최종보고서 공개 되었는지
- ❷ 용역결과의 도정 활용 계획 검토 및 추후 도정 활용계획에 맞춰 추진되었는지 검토가 필요

4 기술용역에 대해서도 사전심의를 통한 재정투명성 제고 필요

- ❶ 서울, 부산, 대구 등에서는 기술용역에 대해서도 시설비통계목(401-01)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기술관련 기초조사, 사전타당성 조사 등이 정책연구 용역 절차와 같이 관리되고 있음. 충청남도 기술용역 관리 조례 제정 필요

학술연구용역 예산

학술연구용역 예산 _ 타시도 의회 언론보도

1 [세종시의회] “무분별 연구용역.....세종시 예산낭비 행정 도마위”

[충부매일] _ 2024. 2. 5.

- ▶ 세종시의회 김영현(사진 · 더불어민주당 · 반곡동) 의원은 5일 세종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예산 먹는 연구용역, 무분별한 추진 자제**해야 한다"고 밝힘
- ▶ 김 의원은 문제점으로 **사전심사 선택적의견 수용, 용역계약자에게 관대한 세종시, 높은 수의계약 의존도** 등을 꼽고 있음
- ▶ 이날 김 의원이 발표한 세종시 연구용역 자료를 보면 지난 4년간 총 215건의 연구용역을 완료했으며 한해 평균 60억원씩 총 240억원의 예산이 투입
- ▶ 이어 "용역완료후 3개월 이내 평가를 실시하고 지체없이 내용과 평가결과를 공개해야 하지만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용역은 18건이며 48건은 공개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임
- ▶ 김 의원은 "용역은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통한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25명의 위원 중 과반을 넘는 당연직은 참석률이 높은 반면 **외부 위촉직의 참석은 매우 저조해 외부위원으로서 의결권 행사가 무의미 함**"

2 [영주시의회] “학술연구용역 관리방안 개선촉구”

[경북일보] _ 2023. 12. 10.

- ▶ 김 의원은 “영주시에서는 주요 정책 및 사업의 계획과 수립을 위해 학술용역 및 정책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며 “작년 한 해 약 22억 원 정도가 용역비로 지출될 정도로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지만 **용역을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
- ▶ 또 “용역과제심의를 받지 않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발주하기 위해 2천만 원 이하로 책정해 발주하는 용역들을 최소화**하고, **POOL 용역비를 과거 용역비의 결산을 참고해 적정한 규모의 예산편성**과 수요조사 시 용역의 목적성·적합성 등을 철저히 검토해달라”고 주문



충청남도 및 교육청 주요 정책 이슈

(행문위)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현황

□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확대 확보

- 과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 배분현황(2008~2021)을 살펴보면 2008년 8천억원
→ 2021년 1.6조원으로 2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음 수도권 균형회계보조금은 2008년 8,221억원에서 2021년 1조6,300억원으로 98.9%가 증가하고, 비수도권은 2008년 8조130억원에서 2021년 7조5975억원으로 5.2%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 과거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비수도권이 약 86.6%를 차지하나, 증감률은 수도권에 꾸준히 증가하고 비수도권은 감소하였음
 - 우리도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008년 8,595억원에서 2019년 1조1,008억원인 28.1% 증가하였으나 2021년도 7,215억원인 △44% 감소되었고 2008년도보다 △16% 감소되었음

★ 그동안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배분현황

(단위: 백만원)

지자체	2008년 균특회계보조금	2019년		2021년	
		균특회계보조금	08년 대비 증가율	균특회계보조금	08년 대비 증가율
전국	8,835,194	12,575,373	42.3%	9,227,578	4.4%
서울	36,152	121,073	234.9%	226,796	527.3%
부산	250,882	322,967	28.7%	324,997	29.5%
대구	167,706	298,596	78.0%	273,207	62.9%
인천	155,654	335,779	115.7%	347,407	123.2%
광주	168,509	177,523	5.3%	153,358	-9.0%

대전	85,445	173,927	103.6%	168,281	96.9%
울산	111,196	154,457	38.9%	138,669	24.7%
세종(13년)*	27,384	79,705	191.1%	47,237	72.5%
경기	630,322	1,116,753	77.2%	1,055,813	67.5%
강원	739,642	1,103,465	49.2%	865,918	17.1%
충북	543,717	773,547	42.3%	553,053	1.7%
충남	859,521	1,100,777	28.1%	721,558	-16.1%
전북	893,865	1,389,076	55.4%	866,963	-3.0%
전남	1,624,210	1,920,571	18.2%	1,183,954	-27.1%
경북	1,143,153	1,687,036	47.6%	1,101,337	-3.7%
경남	1,018,179	1,458,243	43.2%	958,750	-5.8%
제주	407,042	361,879	-11.1%	240,279	-41.0%

※ 출처: 나라살림연구소

★ 2022년 ~ 2024년 우리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현황

- 2022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78,068백만원
- 2023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717,001백만원
- 2024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94,651,726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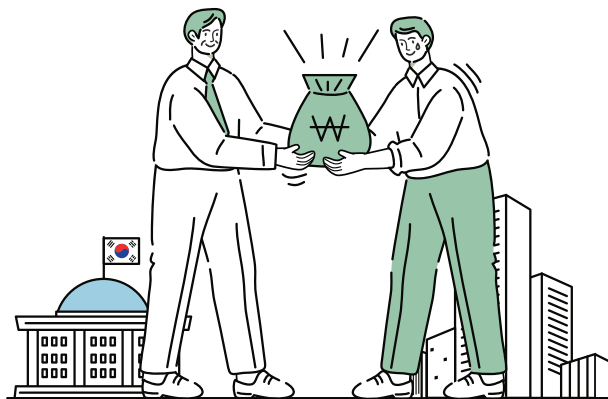
※ 출처: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 검토의견

- 윤석열 정부는 자치분권분야와 균형발전분야를 지방시대위원회 및 지방시대종합계획으로 통합하고 지방주도의 발전전략 강조, 이에 걸맞는 우리도의 지방자치분권 사업 발굴에 필요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확대 확보 필요
- 지방시대위원회¹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의결 기능을 위해 설립되었음

1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 '충청초광역발전계획', '기회발전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육성', '지역 산업·기업 육성 중장기 전략',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시책 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은 여형구 한국항공대 교수가 임명되었으며 위원들은 총 17명이고 임기는 2023.10.18.부터 2025.10.18.(2년)이다

- 현재 지역불균형으로 나타난 지역인구소멸 대비를 위해 우리도는 주요정책사업으로 충청초광역발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충남 수소 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임
 - 또한, 지역 불균형 해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연계하여 균특회계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 필요
- 향후,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 지방시대위원회와 충남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소통으로 우리도 지방시대위원회의 활약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 가야 할 것임



II. 주요 정책 이슈

충청남도 및 교육청 주요 정책 이슈

(농수해위)충남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

- 영농부산물 현장 소각은 대기 중 미세먼지 증가와 산불발생의 주된 원인
 - (산불 원인) 우리나라는 1년 중 약 60.2%의 산불이 봄철 3~6월 사이에 발생함. 유형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33.1%로 가장 높았고, 논·밭두렁 소각과 쓰레기 소각이 각각 12.6%를 차지함.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원인별 산불 발생 현황 및 비율]

(단위: 건, %)

구분	12~2월	3~6월	7~9월	10~12월	합계	유형별 비율
입산자 실화	369	1,142	99	253	1,863	33.1
논·밭두렁 소각	150	518	10	31	709	12.6
쓰레기 소각	178	452	16	63	709	12.6
담뱃불 실화	85	187	6	44	322	5.7
성묘객 실화	52	92	15	7	166	3.0
어린이 불장난	12	8	0	1	21	0.4
건축물 실화	125	158	5	50	338	6.0
기타	408	825	62	199	1,494	26.6
합계	1,379	3,382	213	648	5,622 (100.0)	
월별 비율	24.5	60.2	3.8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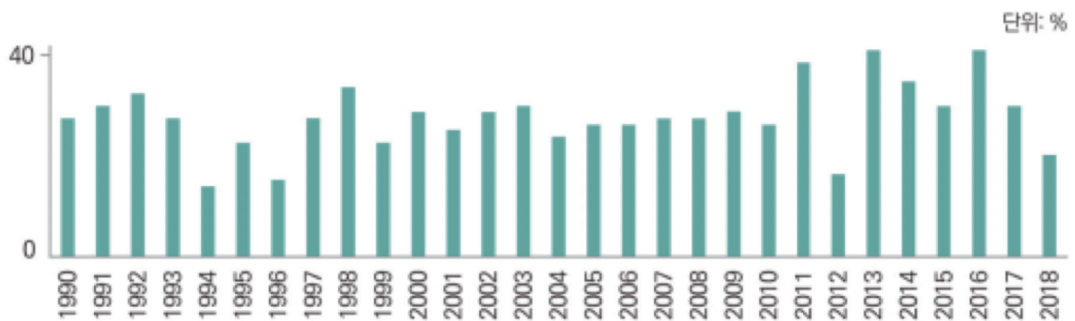
※ 자료: 산림청(2023), 「2022년 산불통계 연보」

- 벼짚, 콩대, 깻대, 전정가지, 깻지 등이 영농부산물에 속하며,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은 산불 및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 불법 소각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인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등의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_x), 황산화물(SO_x) 등을 배출함

- (단속효과 미흡) 영농부산물의 소각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단속하고 있으나, 현장 소각 행위는 지속적으로 일어나 단속강화에도 발생 비율이 감소하지 않는 추세
- (해외 경우) 해외 산불의 경우 주로 자연적 발생 요인이 많으나, 우리나라는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산불이 대다수여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 특히, 논 · 밭두렁 소각과 쓰레기 소각 등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이 빈번함

[전체 산불빈도에서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차지하는 비율]



※ 참고자료: KREI 이슈 제4호(2023.9.13.), '산불(봄 · 가을)을 줄이려면 영농부산물을 제대로 관리해야'

□ 검토 의견

- (개 요)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2024년부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체계 구축 지원사업(사업명)으로 영농부산물 수거 · 처리 등 파쇄지원단 운영을 계획하고 있음
- 예산 1,576백만원(국비 40%, 지방비 60%) 편성하여 우선적으로 ① (취약지역) 산림연접지(100m 이내), ② (관리지역) 고령층, 취약층 ③ (일반지역) 이외 농경지 순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음

[지역별 예산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금액	1,576	100	120	100	100	100	120	60	100	120	100	100	120	120	116	100

- (지원 불충분) 충청남도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을 개소당 2개조 방문 순회는 전체 농경지 영농부산물 파쇄지원이 불충분하여 영농 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예산 확충) 이에,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인력 및 관련 예산 확충 및 현실화하여 미세먼지 및 산불예방 저감 실현이 필요함. 나아가 부산물을 유기농 퇴비로 활용하는 일련의 순환농법 사례를 참고하여 자원순환 실천



II. 주요 정책 이슈

충청남도 및 교육청 주요 정책 이슈

(교육위)2024년 충남형 늘봄학교 운영

□ 충남형 늘봄학교 추진 전략

2023년 하반기 ~ 2024 조성기	2025년 도입기	2026년 안정기
• 기본계획 및 중장기전략 계획 수립 • 늘봄지원센터 구축 및 업무 전담 체계 마련 • 학교, 학부모 설명회 등 홍보 강화 • 지자체 및 부서간 협의체 구성, 협업 체계 마련 • 학교 밖 연계 체제 강화	• 2026년 전 학년 확대 준비 • 충남형 거점늘봄센터 본격 운영 (천안, 보령) • 늘봄지원센터 업무 고도화 • 지자체 및 부서간 공동 사업 운영 • 학교 밖 동네방네늘봄교실 확산	• 전 학년 확대 등 늘봄학교 전면 시행 • 늘봄지원센터 업무 고도화 • 충남형 거점늘봄센터 확대 • 지자체 및 부서간 사업 확대 • 학교 밖 동네방네늘봄교실 정착

□ 2024년 충남형 늘봄학교 운영(안)

학교 안							학교 밖
시간	1학년				2~6학년		1~6학년 공통
	구분	운영내용*			운영내용		
13:00 ~ 15:00	초1 맞춤형 프로그램 (무료)	늘봄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늘봄교실 (초등돌봄)	늘봄연계 교실	늘봄 프로그램 (방과후 학교)	늘봄 교실 (초등 돌봄)	• 지역사회 연계 • 동네방네 늘봄교실 (학교 밖 공간 활용)
		기존 방과후 학교	기존 돌봄 단체 프로그램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수강하지 못한 학생 기존 방과후학교 수강 (방과후 참여 학생)	기존 방과후 학교 수강 (방과후 참여 학생)	기존 돌봄 단체 프로그램 (돌봄참여 학생)	
15:00 ~ 17:00	선택형 프로그램	수익자부담		돌봄 교실 참여			

○ **학교 맞춤형 늘봄학교 지원**(학교 돌봄 다양화, 학교 주도 특화형)

- 사업량 : 아침돌봄 8교, 저녁돌봄 18교, 학교주도특화형 12교
- 내 용 :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과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를 위하여 학교 희망에 따른 선택사업으로 운영

○ **문화·예술·체육 강사 지원 사업**[문화적 소양 함양 / 늘봄지원센터(도교육청) 직접 사업]

- 사업량 : 63교 / 138강좌 / 10,164시간
- 내 용 :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강좌(비보이, 합창 등)를 지원하되, 강사 수급이 어려운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경우는 개설하기 쉬운 강좌도 지원

○ **에듀테크 SW 혼합수업 늘봄학교 프로그램**(미래 교육 연계)

- 사업량 : 46교, 79강좌, 6,886시간
- 내 용 : 대학 교수, 대학(원)생, 기타 대학 소속의 전문 강사 등을 활용하고 대면, 원격, 대면+원격 수업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운영

○ **대학, 진로체험처 연계 학교 안팎 상상늘봄교실**(개별화, 맞춤형)

- 사업량 : 41교, 65강좌
- 내 용 : 대학 및 진로체험처와 학교 간 1:1 매칭으로 운영하되, 늘봄지원센터(지원청) 중심으로 프로그램별(승마, UV랜드 등) 위탁

○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국가책임 강화)

- 사업량 : 2024년 1학기 118교 → 2학기 422교
- 내 용 : 방과후학교 및 돌봄 희망학생 중 참여하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늘봄연계 교실 운영 등

○ **누구나 누리는 충남형 늘봄학교**(촘촘한 맞춤 지원)

- 내 용 : 특수교육대상 학생, 다문화 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 맞춤형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등

Ⅲ. 온마음이 함께 돌보는 생태계 조성

○ 충남형 거점 돌봄센터 구축

- 개 요 : 원도심 학교 유휴공간에 지역 돌봄교실 공간 구축사업
- 사 업 량 : 2개소(천안 1개소, 보령 1개소)
- 사업기간 : 2024년 11월 구축 예정, 2025년 1월부터 운영

○ 지자체 연계 돌봄교실 협력 강화

- 충남형 온종일(마을방과후) 돌봄 사업

구분		내용	비고
개요		학교, 마을조직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협력을 통한 공동체 의식 기반의 지속 가능한 마을돌봄 체계 구축	
역할	교육청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프로그램 구성·운영 지원	
	도청	공모계획 수립 및 선정, 예산확보(도)	
현황		23년)도내 19개소, 24년)20개소 운영 예정	

-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지원 사업

구분		내용	비고
개요		2024~2025년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7개소) 설치 예산지원	
역할	교육청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예산 지원(2년간, 총 7억원)	
	천안시	계획 수립 및 운영, 예산확보(천안시)	
현황		24년)4개소, 25년)3개소(총 7개소)	

- 공동육아나눔터 초등돌봄 지원 사업(2024년 신규사업)

구분		내용	비고
개요		충청남도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공간과 인력을 활용하여 초등돌봄교실을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	
역할	교육청	정보제공 등 홍보, 돌봄 예산 및 프로그램 지원	
	도청	공동육아나눔터 초등 돌봄 운영	
현황		24년 신규사업으로 준비 중(265,000천원 지원)	

○ 학교 밖 동네방네 늘봄교실(지역늘봄교실 확대)

- 대 상 : 늘봄교실 수요가 많은 과밀학교 인근 아파트로, 주민자치센터 등 아파트 및 지역 공간이 확보 가능하고 사업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단체와 연계한 경우
- 내 용
 - 학교 밖 지역공간(아파트 커뮤니티, 주민자치센터 등)을 활용한 지역-학교-마을이 함께 운영하는 학교 밖 늘봄교실
 - 유휴 공간이 없는 과밀학교를 중심으로 추진하여 돌봄 대기 해소
 - 지자체, 마을이 공간 제공뿐 아니라 사업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 검토의견

- 늘봄학교 제도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겪는 돌봄의 어려움과 사교육비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이원화된 초등 방과후·돌봄을 늘봄학교 하나의 체제로 통합·개선하고자 하는 국가적 사업임
- 수혜 대상자(수요자) 중심의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원활한 정보공유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우수한 돌봄 자원을 효과적으로 공유·활용하여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 객관적인 수치를 토대로 한 업무 공조와 그에 따른 제도 설계 및 보완 등으로 지역 간 편차 없는 충남형 늘봄학교 모델을 구축하여야 함.
- 기존 이원화된 체계가 일원화되는 만큼 다양하고 시의적절한 정책홍보(안내)를 통해 수요자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
 - 학생, 학부모, 교원, 지자체, 지역사회 등 관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 제공과 주기적 의견 조취 등을 통한 환류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기반한 모델을 구축해야 함
- 장기적으로 지역돌봄기관(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과 늘봄학교 간 기능 중복에 따른 통합 운영이나 역할 재정립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기경위)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 배경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매년 공표하는 국가별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언론 및 학계에서 한국이 장시간 근로 국가임을 언급할 때 흔히 인용되는 통계임
- 가장 최근 연도인 2022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901시간(전체 취업자 기준)이며, OECD 회원국 평균(1,752시간)보다 149시간 더 장시간
- OECD의 연간 근로시간 통계는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전일제 임금근로자 뿐만 아니라, 주 30시간 미만으로 단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시간제 근로자)¹⁾ 및 자영업자 등 모든 형태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함
- 따라서 OECD에서는 연간 근로시간 통계치의 국가 간 단순 비교를 지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OECD, 2023)

□ 연간 근로시간 현황

- OECD나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020년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매우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반면,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코로나19 충격이 한정적이었고, 장기적으로는 빠르게 감소

[OECD 연간 근로시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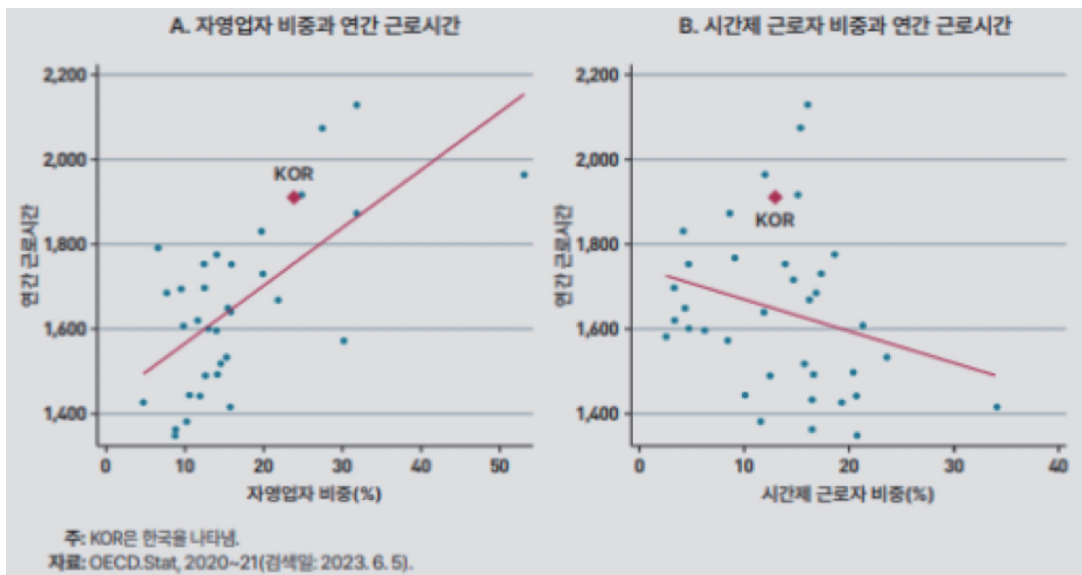
- 이렇듯 빠른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여전히 여타 국가에 비하여 상당히 긴 수준. 2022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한국(1,901시간)이 OECD 전체 38개 회원국 중 5위이며, OECD 평균(1,752시간)보다 149시간 더 장시간

□ 연간 근로시간 비교시 유의점: 취업형태 구성효과

- 자영업자 및 시간제 근로자(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 취업형태의 구성이 국가마다 상이하므로, OECD 연간 근로시간 통계수치를 국가 간에 단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일반적으로 전일제 근로자에 비하여 자영업자의 근로시간은 길고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짧음. 그런데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모든 취업자의 평균 근로시간이므로, 그 국가의 취업형태 구성에 따라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이 길거나 짧게 나타날 수 있음
- 즉,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큰 국가일수록 길어지고, 반대로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큰 국가일수록 짧아짐

- 자영업자 비중이 큰 국가일수록 연간 근로시간이 긴 반면,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큰 국가일수록 연간 근로시간이 짧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 특히 한국의 경우 자영업자 비중이 비교적 크고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작은 편에 속하므로, 이러한 취업형태 구성이 연간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취업형태 구성효과)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취업형태 구성과 연간 근로시간의 상관관계]



□ 결론 및 시사점

- OECD 연간 근로시간 통계는 함정이 많은 통계자료이며, 따라 서 정확한 이해에 바탕한 면밀한 해석이 요구 됨. 서로 다른 두 국가 간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을 비교하고자 할 때, 오해의 여지가 가장 적은 명확한 방법은 동일한 취업형태끼리 비교. 즉, **전일제 근로자는 전일제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는 시간제 근로자와 비교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임**
- 다만, 자영업자 및 시간제 근로자 비중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아직 한국의 근로시간은 여타 OECD 회원국에 비해 다소 긴 편으로 추정. **불합리한 임금체계나 경직적인 노동시간 규제 등이 비생산적인 장시간 근로 관행을 초래하는 측면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개선함으로써 노동 시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취업자 중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작다는 점도 향후 노동정책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큼. 기존 근로시간 관련 정책이 전일제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를 규제하는 데에 집중했다면, **향후에는 유연근무제와 같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늘리고 시간선택제 근로를 활성화하는 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여성 및 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의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발적인 합의에 따라 **유연한 근로시간 선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고용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출처: KDI 포커스 2023년 12월 19일(통권 제12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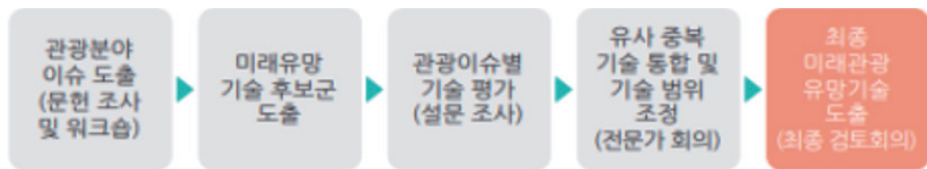


(행문위)관광산업 혁신을 이끄는 10대 미래 유망관광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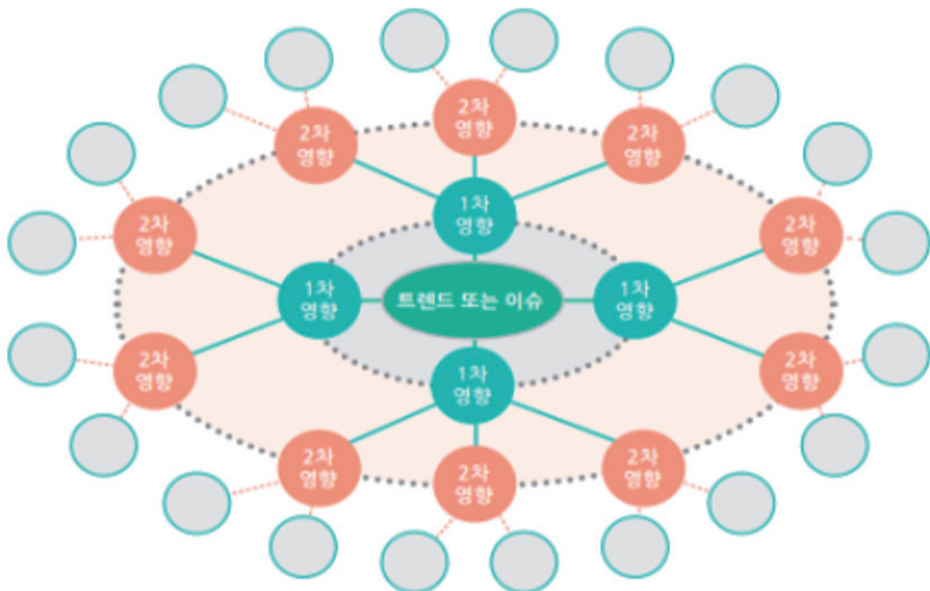
□ 관광 분야 미래환경 변화 이슈

○미래 유망관광기술 도출 과정

- 미래 환경 변화가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관광이슈와 연계되는 국내외 미래 유망기술 후보군을 도출하고 전문가 의견 조사를 통해 이들의 가능성 및 관광 분야에 대한 영향을 진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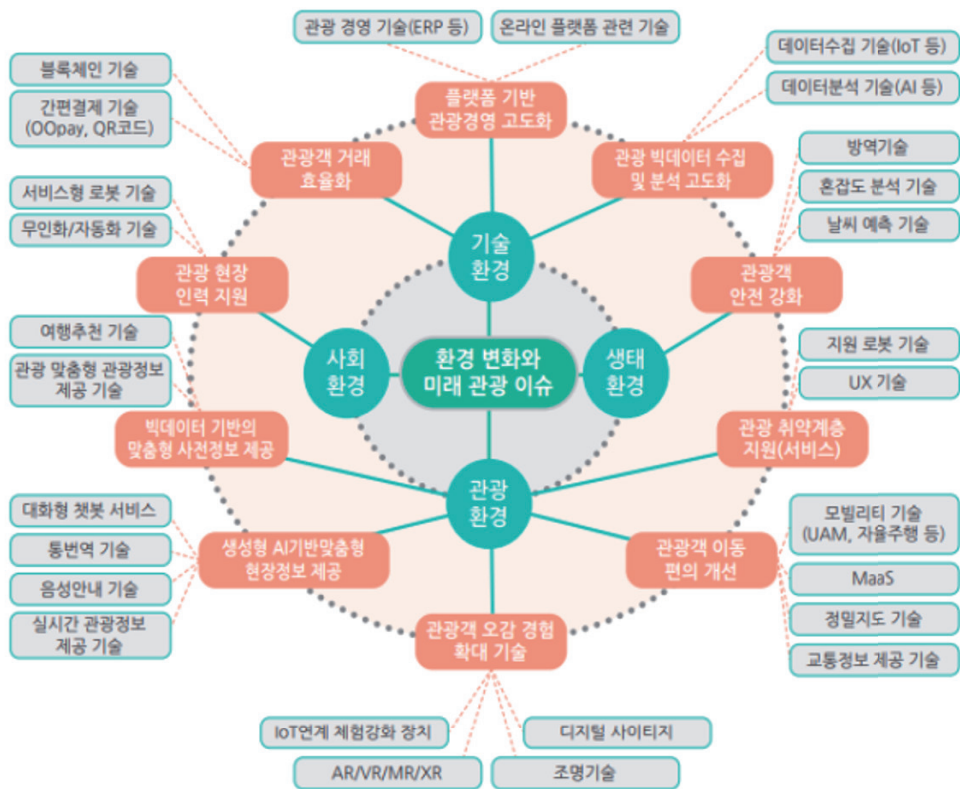
[그림 1] 미래 유망관광기술 도출 과정



[그림 2] 전문가 워크숍에서 Futures Wheel 방법론을 활용한 미래 이슈 도출 예시

○관광 분야 환경 변화와 주요 이슈와 관련 기술

- 기술 · 관광 · 사회 · 생태환경의 각 범주에서 미래 관광과 관련하여 주요 이슈를 도출함
- 브레인스토밍 차원의 이슈 도출 후 미래 관광 분야와 관련한 주요 이슈들과 기술후보군들의 매칭 작업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미래 관광 이슈들은 ① AI(인공지능)기반 맞춤형 관광 정보 제공, ② 관광객 오감 경험 확대, ③ 관광객 이동 편의 개선, ④ 관광 취약 계층 지원(서비스), ⑤ 관광 현장 인력 지원, ⑥ 관광객 거래 효율화, ⑦ 플랫폼 기반 관광경영 고도화, ⑧ 관광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고도화, ⑨ 관광객 안전 강화 등이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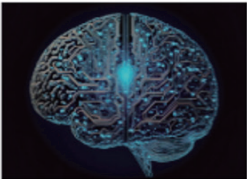
[그림 3] 관광 분야 환경변화와 주요 이슈와 관련기술 도출 결과

□ 10대 미래 유망관광 기술 전망과 대응

- 10대 유망기술은 ① 실시간 정보 제공을 위한 생성형 관광 AI 기술, ② 빅데이터 기반의 관광 디지털 큐레이션 기술, ③ 관광형 첨단 모빌리티 기술, ④ 지능형 관광이동 연계 서비스, ⑤ 관광서비스를 지원하는 무인화 · 로봇틱스 기술, ⑥ 관광객 거래 효율화를 위한 혁신 결제 기술, ⑦ 관광객 실감 경험을 확대하는 인터랙티브 기술, ⑧ 관광경영

고도화를 위한 지능형 운영 플랫폼 기술, ⑨ 관광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디지털 혁신 기술, ⑩ 실시간 관광객 안전을 위한 관광 환경 예측·분석 정밀 기술로 도출

〈표 1〉 10대 미래 유망관광기술

10대 미래 유망관광기술	기술 설명
	실시간 정보 제공을 위한 생성형 관광 AI 기술 • (정의) 이용자의 특정 요구에 따라 능동적으로 관광 관련 실시간 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생성,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술 • (주요 기술) 대규모언어모델(ChatGPT 등의 LLMs) • (전망) 대량의 관광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요구에 실시간으로 관광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
	빅데이터 기반의 관광 디지털 큐레이션 기술 • (정의) 관광의 특정 시점에 특정 관광객이 관심을 가질 만한 아이템(관광 상품, 관광서비스, 관광정보 등)을 선제적으로 찾아주는 시스템 • (주요 기술) 콘텐츠기반 필터링, 협업 필터링, 하이브리드 필터링 • (전망) 관광상품이나 일정 추천에 있어서 AI기반의 추천시스템 기술 발전. 특히, 딥러닝, 머신러닝 융합형 모델 증가
	관광형 첨단 모빌리티 기술 • (정의) 관광객이 이동의 용이성을 위해 사용하는 모빌리티(Mobility)와 첨단 기술이 결합되어 이동의 혁신을 제공하는 관광형 모빌리티 기술 • (주요 기술) UAM 기술, 자율주행차 기술, 개인형이동수단(PM) 기술 • (전망) 도심 내 관광지과 공항·철도역·터미널 간 이동 부분과 섬 간 이동 부분 등에 적용
	지능형 관광이동 연계 서비스 • (정의) 관광이동과 관련하여 모든 교통수단을 하나의 통합된 서비스로 제공하거나 관광객 요구에 따른 교통 제공 서비스 기술 • (주요 기술) MaaS 기술, DRT 기술, 차량 공유 서비스 제공 기술 • (전망) 관광이동에 있어서 이용 가능한 모빌리티 수단 간의 통합 서비스 제공
	관광서비스를 지원하는 무인화·로봇릭스 기술 • (정의) 관광 분야의 일상 및 서비스업 영역에서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무인화 및 로봇릭스 기술을 통해 그동안 인간이 제공해온 관광 지원 서비스를 대체, 보완할 수 있는 기술 • (주요 기술) 무인화·로봇릭스, IoT, 숙박/청소 로봇 기술 • (전망) 호텔, 공항, 관광지 등 무인화/자동화 기술 활용
	관광객 거래 효율화를 위한 혁신 결제 기술 • (정의) 관광객의 상거래 방식에 첨단기술을 접목한 결제 관련 금융서비스 기술 • (주요 기술) 블록체인, 핀테크 등 • (전망) 관광서비스 예약, 결제, 환전 등 적용
	관광객 실감 경험을 확대하는 인터랙티브 기술 • (정의) 관광객의 오감을 자극해 다양한 형태의 관광상품과 서비스를 실제로 체험하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기술 • (주요 기술)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확장현실(XR), 홀로현실(HR) • (전망) 관광체험 콘텐츠에 극사실적으로 몰입하고,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



관광경영
고도화를 위한
지능형 운영
플랫폼 기술

- **(정의)** 관광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활발하고 신속하게 연계하는 기술로서 관광 수요 및 이용객에 관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플랫폼 서비스 기술
- **(주요 기술)** ERP, 클라우드, AI
- **(전망)** 관광시장 예측, 분석, 자동업무처리 고도화



관광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디지털
혁신 기술

- **(정의)** 기존 데이터 처리 역량을 넘어서는 초대용량의 정형·비정형 관광 데이터를 생성, 수집, 저장, 관리 및 분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능화 관광 서비스의 기반을 지원하는 기술
- **(주요 기술)** 데이터 솔루션, 데이터 구축 및 컨설팅, 데이터 서비스
- **(전망)** 관광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기술은 딥러닝 및 인공지능이 결합된 빅데이터 플랫폼이 등장할 것이며, 관광 빅데이터 수집을 위한 기술로서 IoT 기술이 활용될 것으로 전망



실시간
관광객 안전을
위한 관광 환경
예측·분석
정밀 기술

- **(정의)** 관광객의 안전한 관광을 위해 감염·접촉자 추적 및 원격감시시스템의 구축과 교통·혼잡도 상황의 분석, 날씨 및 범죄·재난 상황을 예측·분석할 수 있는 정밀 기술
- **(주요 기술)** 접촉자 추적 시스템, IoT 기반 원격감시시스템, 날씨·재난 예측 기술
- **(전망)** AI와 고성능 컴퓨팅 기술, 머신러닝 기술 등을 통해 관광 환경의 혼잡도 예측 고도화

* 그림 인용 및 출처: 픽사베이(<https://pixabay.com/>) 홈페이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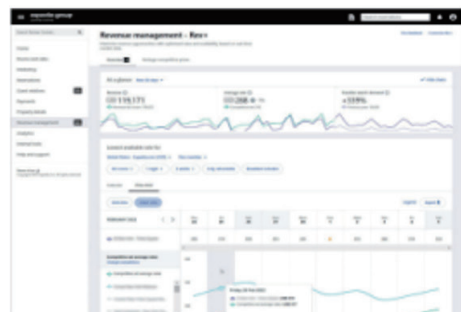
- 10대 미래 유망관광기술은 **단독 기술로 이해하기보다는 다양한 기술이 융합된 형태**로 나타남. 이를 핵심 기술별로 살펴보면 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 기술, ② 관광객 이동 관련 기술, ③ 무인화, 관광 결제 및 관광객 실감 경험을 위한 기술로 구분
-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미래 유망관광기술에는 ‘실시간 정보 제공을 위한 생성형 관광 AI 기술’, ‘빅데이터 기반의 관광 디지털 큐레이션 기술’, ‘관광경영 고도화를 위한 지능형 운영 플랫폼 기술’, ‘관광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디지털 혁신 기술’, ‘실시간 관광객 안전을 위한 관광 환경 예측·분석 정밀 기술’이 있음

챗GPT를 활용한 여행 플래너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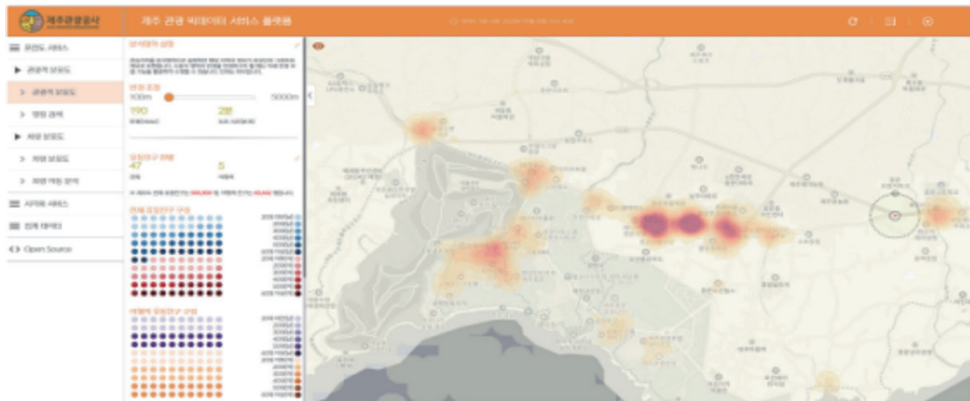
자료: zdnet(2023. 2. 23.)

숙박 수익 관리 솔루션



자료: 익스피디아그룹 홈페이지(<https://welcome.expediagroup.com/>).

관광객 혼잡도 제공 서비스



자료: 비짓제주(visitjeju.net/kr/bigdatamap), 제주관광공사,

[그림 4]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미래 유망관광기술 예시

- 관광객 이동 관련 기술로는 ‘관광형 첨단 모빌리티 기술’, ‘지능형 관광이동 연계 서비스’가 있다. UAM, 자율주행차,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관광형 첨단 모빌리티 기술은 관광객 이동을 용이하게 하여, 관광목적지 간 이동, 관광목적지 내 이동 등에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됨

관광형 첨단 모빌리티 기술(UAM)



자료: 국토교통부(2022),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지능형 관광이동 연계 서비스 : 강릉시 MaaS



자료: 김영호 외(2022), 2022 국가모빌리티 대전환 지원사업.

[그림 5] 관광형 첨단 모빌리티 기술과 지능형 관광이동 연계 서비스 예시

- 무인화, 관광 결제 및 관광객 실감 경험을 위한 기술로는 ‘관광서비스를 지원하는 무인화·로보틱스 기술’, ‘관광객 거래 효율화를 위한 혁신 결제 기술’, ‘관광객 실감 경험을 확대하는 인터랙티브 기술’이 있음
- 무인화·로보틱스, RPA(Robotics Process Automation, 로보틱 처리 자동화) 등 기술의 발전으로 관광객을 위한 관광 지원 서비스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기술(예, 숙박서비스 제공 로봇, 청소 로봇 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혁신 결제 기술(예, 핀테크,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 화폐 등)의 발전으로 향후에는 관광객이 관광상품 및 서비스를 결제 시 관련 금융서비스의 활용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관광지 및 관광시설 현장에서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확장현실(XR)**, **홀로현실(HR)** 등을 활용하여 관광객의 오감을 자극해 다양한 형태의 관광상품과 서비스가 적용되기 시작

호텔 서비스로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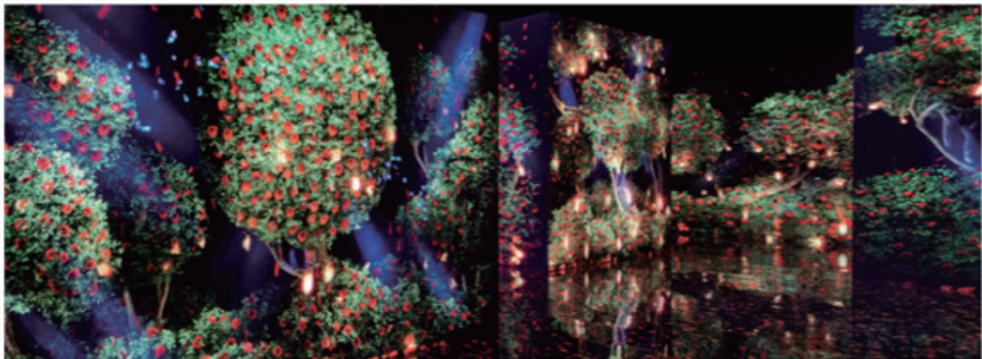
자료: KT AI로봇 홈페이지
(<http://gigagenie.kt.com>)

관광 결제 기술



자료: 한국경제(2019.05.27.)

관광 분야의 실감형 콘텐츠



자료: 아르떼뮤지엄 홈페이지(<https://artemuseum.com>)

[그림 6] 무인화, 관광 결제 및 관광객 실감 경험을 위한 기술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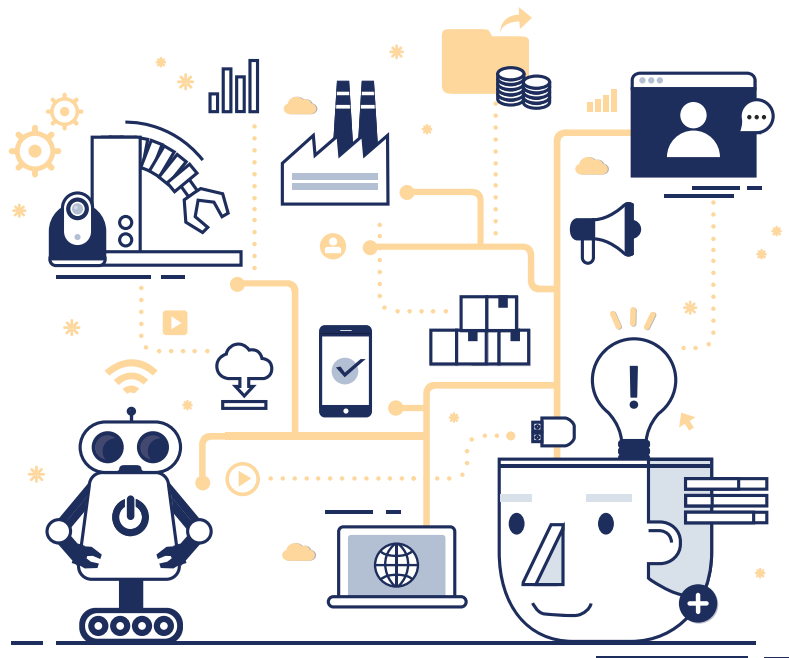
□ 결론 및 제언

- 관광산업의 기술 활용은 응용기술, 특화기술 개발로 연결되기 때문에 공급기술의 응용력이 기술 적용과 활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관광 분야는 원천기술 개발보다는 개발된 기술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새로운 관광 상품과 서비스의 창출, 경제와 사회분야와의 융합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
- 이처럼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관광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것도 중요하나, 이러한 **기술 발전이 관광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 및 부작용, 역기**

능 등에 대한 사전 분석을 통해 사후에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미래 기술이 관광산업분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지와 무슨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를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미래 연구를 위한 다양한 방법론들을 통한 접목이 요청됨

- 향후 관광분야에서 미래 기술이 도입 및 구현 될수 있도록 **관광서비스 R&D사업의 확대**를 비롯하여 주요 관광도시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으로 **‘미래유망관광기술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도 논의 될 수 있을 것이다. 더하여 관광산업 혁신을 이끌 미래 유망관광기술을 확산하고 융합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관광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

※ 출처 : 한국관광문화연구원 「문화관광인사이트」제187호 주요내용 요약, 재정리함
(정광민 · 한희정 · 박준희 · 박병호 연구원)



(복합위)새로운 관점으로 하수처리장 들여다보기

□ 하수처리 유래 및 과정

- 인류는 수백만 년 전에도 원시적인 형태의 하수도를 도입하여 이용
- 근래에 들어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한 하천의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여러 선진국 등에서는 위생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수도를 점차 발전시켜 현재의 고도화된 하수도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이로 인해 공중위생의 급격한 향상을 이룸
- 하수도의 많은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는 하수처리장 임
-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한 대부분의 오염수는 하수관로를 통해 최종적으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며, 오염물질을 상당 부분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처리하여 하천 등 수계로 방류하게 됨

□ 하수도법상 방류수 수질기준 연혁

- 현재 방류수 수질기준은 하수도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이 <표 1>과 같이 제시됨**

연도	구분		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	생태독성
			[mg/L]	[mg/L]	[mg/L]	[mg/L]	[mg/L]	[개/mL]	[TU]
1996	-		20	40	20	60	8	-	-
2001	특정지역		10	40	10	20	2	3,000	-
	기타지역		20	40	20	60	8	3,000	-
2008	> 50 m³/d		10	40	10	20	2	3,000	-
	< 50 m³/d		10	40	10	40	4	3,000	-
2011	> 50 m³/d		10	40	10	20	2	3,000	1
	< 50 m³/d		10	40	10	40	4	3,000	1
2012	> 500 m³/d	I	5	20	10	20	0.2	1,000	1
		II	5	20	10	20	0.3	3,000	1
		III	10	40	10	20	0.5	3,000	1
		IV	10	40	10	20	2	3,000	1
	500~50 m³/d		10	40	10	20	2	3,000	1

2021	< 50 m ³ /d		10	40	10	40	4	3,000	1
	> 500 m ³ /d	I	5	15(TOC)	10	20	0.2	1,000	1
		II	5	15(TOC)	10	20	0.3	3,000	1
		III	10	25(TOC)	10	20	0.5	3,000	1
		IV	10	25(TOC)	10	20	2	3,000	1
	500~50 m ³ /d		10	25(TOC)	10	20	2	3,000	1
	< 50 m ³ /d		10	25(TOC)	10	40	4	3,000	1

표 1.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연혁

□ 하수처리장 발전과정 및 처리공법

○하수처리장 발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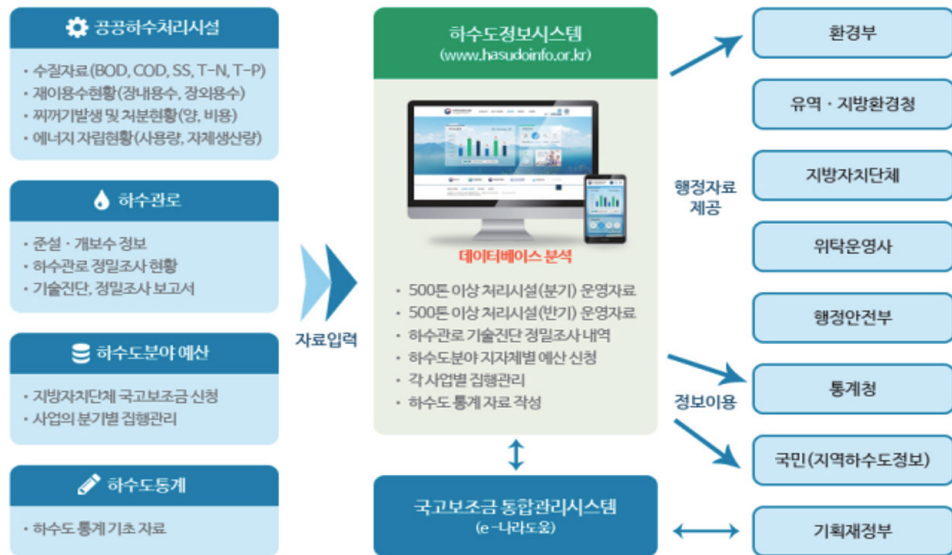
- 우리나라 최초의 하수처리장은 1978년 서울의 중랑천 인근에 준공된 청계천하수처리장(현 중랑물재생센터)이며, 이후 대규모 하수처리장들이 하나씩 건설되기 시작함
-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장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기준 4,33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하수도 보급률도 94% 이상이 되었음
- 일부 도서지역 등 현실적으로 하수도 보급이 어려운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하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향후 하수도 보급률의 지속적인 증가로 하수도 미보급으로 인한 하수도 혜택의 사각지대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하수처리공법

- 초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활성슬러지 공법으로 유기성 오염물질을 주로 처리하였다면, 현재는 하천 녹조발생의 주요 원인인 질소 및 인을 제거하기 위한 고도처리공법과 막여과 등 오염물질 처리효율을 향상시키는 위한 3차 처리기술의 적용이 확대됨

하수도정보시스템은 하수도법 제68조의2(하수도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근거하여 하수도 정책의 수립·시행 및 통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가공·분석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스템 운영 목적 외 정보제공은 데이터 생산자인 하수도사업자(지자체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처리장의 새로운 방향과 다양한 가치 제시

○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새로운 화학물질에 대한 현황 파악과 처리기술 개발이 요구

-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화로 인해 다양한 화학물질이 생산 및 사용되고 있어 과거와는 다르게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이 다양하며, 제거되기 어려운 난분해성 물질의 비중도 점차 증가
- 하지만, 공공하수처리장의 수질기준은 <표 1>과 같이 7개 항목으로 관리되고 있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새로운 화학물질에 대한 현황 파악과 처리기술 개발이 요구
- 비록 관리대상 오염물질은 아니지만, 하수처리장에서 다양한 미량오염물질의 분포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와 처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진행
- 특히 2010년대 후반부터 새로운 환경오염물질로 이슈가 되기 시작한 **미세플라스틱 및 과불화화합물** 등과 같은 미량오염물질은 모니터링을 위한 분석방법 확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
- 국립환경과학원 상하수도연구과에서는 미세플라스틱 분석법 마련 및 미지의 물질을 탐색하는 기법 중 하나인 비표적 분석 등 최신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연구를 추진중

○ 하수처리장의 활용가치 또한 재조명

- 코로나19 시기에 연구자들은 하수 유입수에서 검출되는 바이러스의 검출 양상을 평가하여 사회 집단의 감염병 감시에 활용하는 새로운 개념의 학문인 **하수기반역학**을 도입

- 이후 지속적으로 **하수를 기반으로 하여 감염병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중이며, 이러한 체계가 구축된다면 하수처리장이 하나의 정보 제공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대비필요
			초기단계	5세대 하수도
			4세대 하수도	미량유해물질처리
			자원재활용	자원 재활용
			영양염류 처리	영양염류 처리
			유기물질 처리	유기물질 처리
			오수·우수배제	오수·우수배제
우수배제 미흡	(농어촌)보급저조	적정관리		
2세대 하수도	3세대 하수도			
유기물질처리	영양염류처리			
1세대 하수도	유기물질처리	유기물질 처리	유기물질 처리	유기물질 처리
오수·우수배제	오수·우수배제	오수·우수배제	오수·우수배제	오수·우수배제

[하수도 발전단계(제2차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인용)]

□하수(下水) 기반감염병감시(KOWAS, KOrea WAstewater Surveillance) 사업추진체계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 추진체계(질병청)]

○ 하수처리장의 물 재이용으로 물부족 해소

- 하수처리장의 또 다른 가치는 **물 재이용**에 있다고 할 수 있음. 현재도 다양한 목적으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고 있지만,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물부족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공공하수처리장의 **물 재이용률은 약 10% 내외**(장내용수 제외)이지만, 국가 차원에서 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물 재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등 부산물을 자원화하기 위해 다분히 노력**하고 있으며, 자원이 곧 경쟁력이 되는 현 상황에서 하수처리장의 활용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웹진YES」 2월호 주요내용 요약, 재정리함
(상하수도연구과 이재호 연구사)

Ⅲ. 정책분야

정책 동향

(농수해위)농업인력 부족과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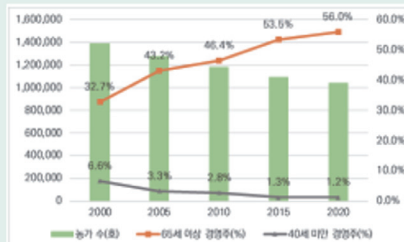
① 여성농업인 확대를 위한 과제

□ 농업인력 감소로 인한 농업노동력 부족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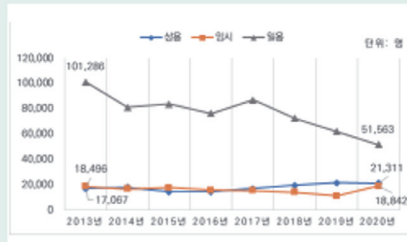
○ 농가 수 및 농업 임금근로자 규모의 감소세 지속

- 농가 수는 2000년 약 138.3만 호에서 2020년 약 103.5만 호로 감소함. 같은 기간 경영주가 65세 이상인 농가 비율은 32.7%에서 56.0%로 증가한 반면, 40세 미만 경영주 비율은 6.6%에서 1.2%로 감소하여 고령화됨(엄진영 외, 2021: 106)

〈그림 1〉 농가 수 및 고령·청년 경영주 비율 변화(2000-2020년)



〈그림 2〉 농업 임금근로자 규모 변화(2013-2020년)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를 연구진 재구성. 자료: 통계청(2022), 《지역별고용조사(하반기)》 결과를 연구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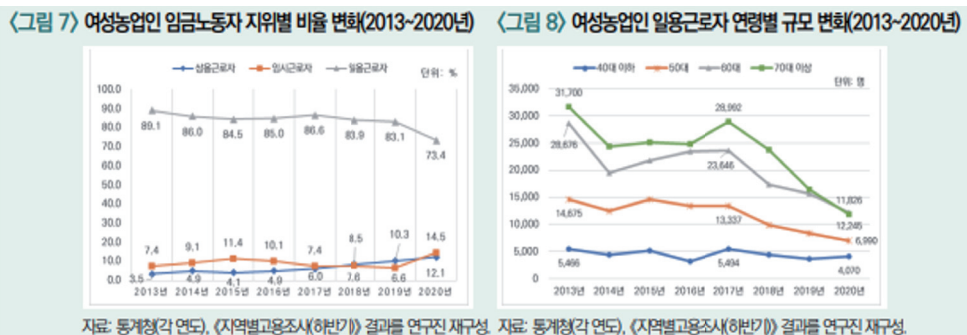
○ 농업노동력 부족의 만성화는 농업경영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

- 농업인력의 감소는 농업 기술 발전 및 기계화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인력 수요가 줄었기 때문일 수 있으나, 실제 농업 현장에서는 만성적인 일손 부족으로 고충을 겪고 있음. 2022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결과, 농업인 2명 중 1명은 농업경영의 위협 요소로 '일손 부족'(49.8%)을 꼽았음(김동훈·박혜진, 2023: 11)
- 엄진영 외(2020: 90)3)의 연구에서 역시 작물재배업과 축산업 농가 모두 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인력 부족을 겪는 작물재배업 농가의 경우 주로 수확(51.8%), 적과(29.8%), 매기(25.4%), 가지치기(16.7%), 순 따기(9.6%) 작업 시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함

□ 농업노동력 부족 속 여성농업인에 대한 의존도 증가

○ 농업노동력 부족에 대응한 가족노동력 확대 및 여성농업인 중요성 증대

- 2023년 기준 여성농업인은 농사일 중 평균 50.2%를 담당하며, 주로 수확 작업, 잡초 관리 등 기계화가 덜 된 노동집약적 영농활동에 종사함(이순미 외, 2023: 55).6) 이는 인력 부족 시 농가의 어려움이 큰 농작업 종류(엄진영 외, 2020: 90)7)와도 일치함
- 고령화로 농업노동력 부족이 심화하는 현실과 채소, 과수 중심의 영농 형태 변화를 고려할 때, 여성농업인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그러나 남성 중심 문화와 제도로 인한 법적 지위 미약, 농사일과 가사의 이중 노동 부담, 부족한 영농 기술 및 리더십 활동 등은 걸림돌이 되고 있음(강혜정, 2008: 279)



○ 농번기 노동력 부족을 가중할 우려가 있는 여성농업인 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 필요

- 일용근로자에서 두드러지는 장년층 이상 여성농업인의 감소는 기계화율이 낮은 과수, 노지채소 등을 중심으로 1개월 미만 단기 일용직에 대한 집중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농번기의 노동력 부족을 가중할 우려가 있음
- 이 같은 현실은 농업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생산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신규 여성농업 인력의 유입과 기존 여성농업인의 생산성 및 참여율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을 동시에 요구함

□ 농업인력 부족 완화와 여성농업인 확대를 위한 과제

○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개발 및 보급

- 기존 남성 위주 농기계는 여성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아 여성농업인이 사용하기 쉽지 않음. 소형·경량·자동화를 특징으로 한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적극적인 개발 및 보급이 요구되는 이유임. 특히 여성농업인의 종사 비율이 높지만, 기계화율이 떨어지는 밭농사에 특화된 농기계의 개발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농기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사용을 위한 안전·기술 교육이 필수임. 그 일환으로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관련 교육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건강서비스 및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 여성농업인은 남성농업인과 비교해 농작업 관련 유병률이 높음. 2022년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결과,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이 여성농업인은 6.3%(남성, 4.5%)에 달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2024년 본 사업으로 전환해 전국 여성농업인 3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다만, 70세가 넘어도 농사일을 지속하는 여성농업인이 적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51~70세라는 대상 기준의 확대가 필요하며, 일용직 등 종사상 지위로 인한 서비스 접근의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 또한 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급 시설이 없는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한 대책과 검진 결과에 따라 필요한 치료가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연계하는 사후 지원체계도 마련돼야 할 것임

○ 정보 접근성 확대를 통한 다양한 잠재 및 예비 여성농업인 확보

- 영농활동에 관심이 있는 귀농·귀촌 희망자와 도시의 청년 여성,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결혼이주여성 등을 잠재 또는 예비여성농업인으로 간주하고, 농번기에 일용직, (초)단기 인력등의 형태로 참여하기 용이한 채널을 마련함으로써 일손 부족 완화를 시도할 수 있음

○ 농업·농촌 전반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가부장적인 농촌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의사결정권이나 대표성, 경제력과 직결되는 실질적인 지위 등은 낮은 상황임(편지은, 2023: 3). 이는 여성농업인이 농업에 있어 주도적인 권리행사를 어렵게 하거나 마을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회의구조에서 소외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며, 삶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음
- 이에, 현재시행 중인 농업·농촌의 양성평등 인식개선 교육의 남성참여율을 제고하는 한편, 농촌의 각종회의구조에서 여성의 참여 비율을 높이는 등의 노력으로 여성농업인이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 이슈플러스, 제15호(2024.2.8.)

(건소위)소방차 화재진압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제도의 한계와 향후 과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이후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명확히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2018.3)이 이루어졌으나, 실제 강제처분 사례는 지금까지 단 4건에 불과함. 소방관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주저함이 없도록 강제처분에 대한 적극적인 시행의지와 함께 직무수행상 소송지원, 공무원의 배상책임 제한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문제제기

- 스프링클러 없는 노후아파트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 중요성이 커짐
 - 화재는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면 자칫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진입이 매우 중요하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소방차들이 화재발생지역에 진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이후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하여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및 손실보상 등을 명확히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2018.3.27.일부개정, 2018.6.27. 시행)이 이루어짐
 - 개정법이 시행된지 5년이 넘는 동안 소방차 등의 긴급출동 시 방해가 되는 주차 차량에 대한 실제 강제처분 사례는 4건에 불과함

-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세부적인 규정 마련
 - 제천화재로 인한 「소방기본법」 개정 이전에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관련 규정은 존재했었음
 - 소방기본법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손실보상을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세부 규정 마련
 - 종전에는 소방공무원의 활동 또는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위한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구체적인 손실보상 절차가 없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하여 소방이라는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음

개정전 「소방기본법」 (법률 제14839호)	현행 「소방기본법」 (법률 제19026호)
제25조(강제처분 등) ① ~ ② 생략.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강제처분 등) ① ~ ② 생략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 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의2(손실보상) ①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4. ~ 5.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집행 현황

- 2018년 관련법 개정 이후 5년 동안 화재진압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현황은 4건에 불과
 -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2건), 인천(1건), 충남(1건) 3개 지역에서 총 4건에 불과
 - 이에 반해 강제처분 필요상황에 대한 설문결과는 응답자의 44.3%가 출동 10회 중 3회 이상 발생한다고 응답하고 있음

[표] 소방차 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현황

(단위: 건)

구분	「소방기본법」 개정 전	「소방기본법」 개정 후 (2018.6.27. 시행 이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0	0	0	0	1	1	2
서울	-	-	-	-	1	-	1
인천	-	-	-	-	-	-	1
충남	-	-	-	-	-	1	-

※ 자료: 소방청, 「국회입법조사처 회신자료」, 2024.1.10.

□ 강제처분 집행의 한계점

- 강제처분에 따른 소송 등 각종 민원대응 문제
 - 국립소방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제처분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91.6%가 필요하다고 응답(“매우 필요하다” 63.3%), 또한 강제처분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소방차 통행을 위해 주·정차된 차량을 이동시켜야할 때가 38.9%로 가장 많음
 - 현장 소방공무원 74.5%는 강제처분의 현장 적용에 대해 “잘되지 않는다”고 응답, 그 이유는 42.5%가 “사후 처리 과정상 행정적·절차적 부담”, 20.4%가 “강제처분 행위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우려”로 응답함
- 강제처분 활용지침의 비활용성
 -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강화훈련 2022년 4,095회, 2023년 5,346회 실시
 - 소방청의 「강제처분 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통행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동조치 요구→이동불가시 강제처분 설명→지휘대장의 지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 강제처분의 조건을 ‘재산권 제한에 상응하는 합리적 비례관계를 갖춘 경우’로 모호하게 표현

□ 향후 과제

○ 직무수행상 소송지원

- 강제처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강제처분 후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부담감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확대
- 현재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책임보험’, ‘행정종합배상 공제’ 등이 운영 중이나, 강제처분으로 인한 소송의 경우 보장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강제처분에 따른 소송을 보장 대상으로 명확화 할 필요가 있음

○ 공무원의 배상책임 제한

-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국가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 개인이 일차적으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함
- 이 경우 공무원이 배상의 가능성에 직접 노출되어 공무원의 소극행정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직접 배상책임은 배제하는 방안,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등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강제처분에 대한 적극적인 시행 의지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소방관서장과 현장지휘관의 적극적인 강제처분 시행 의지가 있어야 함
- 현장 소방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신속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매뉴얼 간소화·명확화
- 강제처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실태 및 현장영상 공개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 필요
- 소방관뿐만 아니라 강제처분으로 인해 국민에게도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민원 전담인력 등 대책 마련 필요

※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182호 재작성

(교육위)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 1학기에 2,000개교 이상, 2학기에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도입

- 희망하는 초 1학년 누구나 늘봄학교 이용지원, '26년까지 모든 학년으로 확대
- 초 1학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중 매일 2시간 무료 제공
-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업무 부담 해소를 위한 늘봄지원실 설치 추진
- ※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개최('24.2.5.) 및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

□ 늘봄학교란?

○ (정의) 정규수업 외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

-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단일체제

※ 향후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은 없어지고 늘봄학교 하나의 체제만 존재

○ (필요성) 합계출산율 0.78명, 아이 한명 한명에 대한 국가책임 절실 등

-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공백 심각(유치원·어린이집 오후 이용률 90.3%, 방과후 50.3%, 돌봄 11.5%)
- 학부모, 학교에서의 돌봄 선호(학부모 초등돌봄 선호기관 : 학교돌봄 81.4% / 교육부 2023년)
- 학부모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사교육비 절감 정책 시급(지난 10년간 초등 사교육비 증가세*)

* 코로나19 기간 제외

□ 주요내용

○ 올해 1학기 2,000개교 이상,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누구나 늘봄학교 이용

- 기존 초등학교 방과후 · 돌봄체제와 다르게 신청 우선순위, 추천, 탈락 등 없음
- 맞벌이 가정 등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2024년 초 1학년 → 2025년 초 1~2학년 → 2026년 초 1~6학년

○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매일 2시간 무료 제공

- 초 1학년 성장 · 발달 단계와 학부모 수요 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2025년은 초 2학년까지 확대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2시간 제공 계획

○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부담 해소

- 기간제교원, 늘봄실무직원 등의 배치로 기존 방과후 · 돌봄을 포함한 늘봄학교 신규 업무와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 담당(학교에 늘봄지원실 설치)
- 2025년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늘봄지원실장으로 지방공무원을 배치할 예정

□ 달라지는 점





□ 2024학년도 초1 예비 학부모 대상 늘봄학교 수요조사 결과

'24년 교육부 주관, 초1 예비학부모 대상 늘봄학교 관련 전수조사 개요

- (목적) 2024년 늘봄학교 운영 준비에 참고할 기초데이터 수집 · 이용
- (대상) 2024학년도 초등1학년 입학예정 학생(약34만명)의 학부모 1명
- (기간) 2024.1.1.(월) ~ 2024.1.8.(월) (7일간)
- (방법) 온라인 조사

□ 응답자 현황

- '24년 초1 예비학부모(1인) 약 34만명 중 52,655명 참여(15.4%)

□ 주요 조사결과

- (참여희망) 전체응답자의 83.6%가 늘봄학교 참여희망(44,035명)
 - 그 외 가정돌봄(8.0%), 학원수강(6.4%), 기타(1.2%), 친지돌봄(0.8%) 순
- (희망시간) 정규수업 이후 ~ 오후4시(29.8%) > ~오후3시(25.4%) > ~ 오후5시(19.5%) > ~ 오후2시(11.6%) > ~ 오후8시(1.2%) 순

늘봄학교 참여 희망시간

구분	~14시	~15시	~16시	~17시	~18시	~19시	~20시	계
응답자(명)	5,124	11,180	13,122	8,592	3,850	1,658	509	44,035
비율(%)	11.6	25.4	29.8	19.5	8.7	3.8	1.2	100

- (희망활동) 초1 맞춤형 프로그램 + 선택(방과후,돌봄)(81.0%) > 초1 맞춤형 프로그램만(11.7%) > 방과후 프로그램만(5.1%) > 돌봄만(2.1%) 순
- (선호프로그램) 체육(44.9%), 문화·예술(39.3%), 심리·정서(10.2%), 디지털(4.8%), 기타(0.8%) 순 (1순위 응답)

학부모가 선호하는 프로그램(%)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체육	18,344	44.9	10,600	26.0	7,010	17.2	4,618	11.3
문화·예술	16,052	39.3	17,258	42.3	5,872	14.4	1,595	3.9
디지털	1,949	4.8	5,632	13.8	13,980	34.2	18,080	44.3
심리·정서	4,160	10.2	7,082	17.3	13,599	33.3	15,285	37.4
기타	324	0.8	257	0.6	368	0.9	1,251	3.1
전체	40,829	100	40,829	100	40,829	100	40,829	100

※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 재작성(2024. 2월)

IV. 세입징수 실적

국세

2023년 국세수입 실적

(‘24.1월말 기준)

○ (국세수입) ‘23년 연간 국세수입은 344.1조원

- 전년실적(395.9조원)대비 △51.9조원* 감소. 예산(400.5조원)대비로는 △56.4조원 감소
- 작년 9월에 발표한 세수 재추계치(341.4조원) 대비 +2.7조원 증가

○ (감소 사유) 국세수입 감소는 기업실적 악화 및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

- 법인세는 ‘22년 4/4분기 이후 본격화된 경기둔화에 따른 ‘22~’23년 상반기 기업 영업이익 부진으로 전년대비 △23.2조원 감소
-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에 따라 전년대비 △14.7조원 감소

(단위 : 조원, %)

세목	구분	'22년 실적	'23년 예산	'23년 재추계	12월 당월			12월까지 누계				'23년 예산 대비		'23년 재추계 대비	
					'22년	'23년	증감	'22년	'23년	증감	(증감율)	증감액	비율	증감액	비율
■ 총 국세		395.9	400.5	341.4	22.3	19.8	△2.5	395.9	344.1	△51.9	(△13.1)	△56.4	(△14.1)	2.7	(0.8)
■ 일반회계		385.2	390.3	331.1	20.9	18.8	△2.1	385.2	333.9	△51.2	(△13.3)	△56.3	(△14.4)	2.8	(0.9)
○ 내국세		352.3	358.0	303.1	15.0	14.7	△0.3	352.3	306.1	△46.2	(△13.1)	△51.9	(△36.1)	2.9	(1.0)
- 소득세		128.7	131.9	114.2	7.2	8.0	0.8	128.7	115.8	△12.9	(△10.0)	△16.0	(△12.2)	1.6	(1.4)
- 법인세		103.6	105.0	79.6	2.2	2.4	0.2	103.6	80.4	△23.2	(△22.4)	△24.6	(△23.4)	0.8	(1.0)
- 상속증여세		14.6	17.1	13.8	0.7	1.6	0.9	14.6	14.6	0.0	(0.3)	△2.5	(△14.6)	0.8	(6.1)
- 부가가치세		81.6	83.2	73.9	3.6	1.4	△2.1	81.6	73.8	△7.9	(△9.6)	△9.4	(△11.3)	△0.1	(△0.2)
- 개별소비세		9.3	10.2	9.0	0.8	0.7	△0.1	9.3	8.8	△0.5	(△5.3)	△1.4	(△13.5)	△0.1	(△1.7)
- 증권거래세		6.3	5.0	6.5	0.4	0.4	△0.0	6.3	6.1	△0.2	(△3.5)	1.1	(22.2)	△0.4	(△5.9)
- 인지세		0.8	0.8	0.8	0.1	0.1	0.0	0.8	0.8	△0.0	(△0.2)	△0.0	(△2.3)	0.0	(2.9)
- 과년도수입		7.3	4.8	5.4	0.1	0.1	△0.0	7.3	5.7	△1.6	(△22.1)	0.9	(18.9)	0.3	(5.6)
○ 교통에너지환경세		11.1	11.1	10.8	0.8	0.9	0.1	11.1	10.8	△0.3	(△2.5)	△0.3	(△2.7)	0.0	(0.1)
○ 관세		10.3	10.7	7.3	0.7	0.4	△0.2	10.3	7.3	△3.0	(△29.4)	△3.4	(△32.0)	0.0	(0.4)
○ 교육세		4.6	4.7	5.2	0.2	0.2	0.0	4.6	5.2	0.5	(10.9)	0.4	(9.6)	△0.1	(△1.4)
○ 종합부동산세		6.8	5.7	4.7	4.3	2.6	△1.8	6.8	4.6	△2.2	(△32.4)	△1.1	(△19.5)	△0.1	(△1.5)
■ 특별회계		10.8	10.2	10.3	1.4	1.0	△0.4	10.8	10.1	△0.6	(△6.0)	△0.1	(△0.7)	△0.1	(△1.4)
○ 주세		3.8	3.2	3.5	0.1	0.1	△0.0	3.8	3.6	△0.2	(△5.3)	0.4	(11.0)	0.1	(2.2)
○ 농특세		7.0	7.0	6.8	1.3	1.0	△0.4	7.0	6.6	△0.5	(△6.4)	△0.4	(△6.1)	△0.2	(△3.3)

※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4.1.31.)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 □ 도내 총 지방세 세입현황

IV. 세입징수 실적

도 세

충남도내 지방세 징수현황

(‘24. 1월말 기준)

□ 도 및 시군 지방세 세입현황

- (도내 총 지방세) ‘24년 1월말 기준 도세 및 시군세 징수액 3,110억원
 - 연 목표액 대비 6.4% 징수율, 1월 목표액 대비 105.4% 징수율
 - 전년동기(3,434억원) 대비 - 324억원 감소(△9.4%)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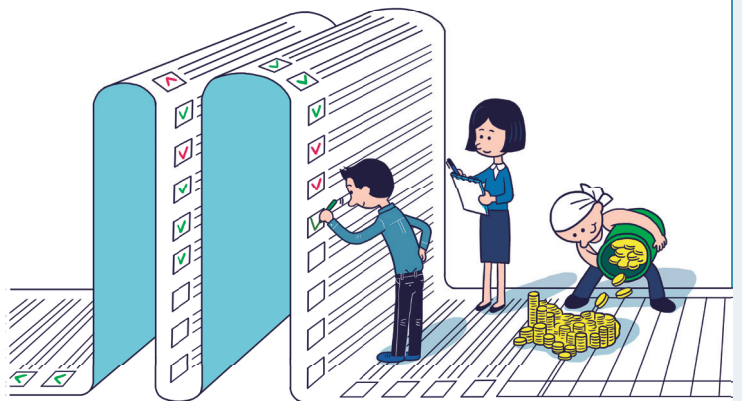
구 분	예산액 (A)	1월까지 목표액 (B)	징수액 (C)	징수율		전년동기 징수액 (D)	전년대비	
				예산액 대비 (C/A)	당월 목표 대비 (C/B)		증감액 (C-D=E)	증감율 (E/D)
합 계	48,500	2,949	3,110	6.4%	105.4%	3,434	△324	△9.4%
도 세	29,086	1,386	1,342	4.6%	96.8%	1,648	△306	△18.6%
시군세	19,414	1,563	1,768	9.1%	113%	1,786	△18	△1.0%

□ 도 지방세 세입현황

- (도 지방세) ‘24년 1월말 기준 지방세 1,342억원 징수
 - 연목표액 대비 4.6% 징수율, 1월 목표액 대비 96.8% 징수율
 - 전년동기액(1,648억원) 대비 - 306억원 감소함(△18.6%감소)
- (취득세) ‘24년 1월말 기준 취득세 828억원 징수
 - 1월 세입중 취득세 징수액은 도세의 61% 차지함
 - 1월 목표액 대비 28억원 감소, 전년동기액 대비 49억원 증가함(6.3%)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액 (A)	1월까지 목표액 (B)	징수액 (C)	징수율		전년 동기 징수액 (D)	전년대비	
					예산액 대비 (C/A)	당월 목표 대비 (C/B)		증감액 (C-D=E)	증감율 (E/D)
도세	소 계	29,086	1,386	1,342	4.6%	96.8%	1,648	△306	△18.6%
	취 득 세	10,234	856	828	8.1%	96.7%	779	49	6.3%
	등록면허세	773	110	108	13.9%	97.8%	89	19	21.1%
	레 저 세	228	16	23	10.2%	145.0%	18	5	29.1%
	지방소비세	13,615	—	△39	△0.3%	—	338	△377	△111.6%
	지역자원시설세	1,319	44	31	2.3%	69.8%	31	0	△0.9%
	지방교육세	2,864	355	359	12.5%	100.9%	362	△3	△1.0%
	지난년도수입	53	5	33	62.3%	644.5%	31	2	6.5%



IV. 세입징수 실적

시군세

충남 시군별 시군세 징수현황

(‘24. 1월말 기준)

- (목표액 대비) 도내 시군별 시군세 1월 총 목표액 1,562억원 대비 113% 증가
 - 2024년 1월 징수 목표 대비 징수율이 높은 시군은 태안군(159%), 아산시(157%), 보령시(136%), 예산군(134%) 등으로 나타남
 - 반대로, 1월 징수 목표액 대비 실제 징수율이 낮은 시군은 논산시(70%), 서천군(83%), 금산군(91%), 부여군(92%)으로 나타남
- (전년대비) 전년동기 대비 시군세 징수액은 △18억원(-1.0%) 감소
 - 2024년 1월 징수 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증가한 시군은 보령시(9.7%), 금산군(9.6%), 당진시(4.9%), 계룡시(4.4%) 등으로 나타남
 - 반대로, 징수 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감소한 시군은 서천군(-13.9%), 천안시(-6.1%), 홍성군(-2.5%), 공주시(-2.0%), 부여군(-2.0%), 논산시(-1.2%)으로 나타남

(단위: 백만 원)

구 분	예산액 (A)	1월까지 목표액 (B)	징수액 (C)	징수율		전년동기 징수액 (D)	전년대비	
				예산액 대비 (C/A)	당월 목표 대비 (C/B)		증감액 (C-D=E)	증감율 (E/D)
합 계	1,941,447	156,291	176,844	9.1%	113%	178,646	△1,802	△1.0%
천 안 시	572,000	50,728	53,643	9.4%	106%	57,155	△3,512	△6.1%
공 주 시	87,500	6,807	7,532	8.6%	111%	7,684	△152	△2.0%
보 령 시	70,120	5,192	7,058	10.1%	136%	6,434	624	9.7%
아 산 시	397,100	22,100	34,784	8.8%	157%	34,679	105	0.3%

서 산 시	180,400	14,834	16,409	9.1%	111%	16,040	369	2.3%
논 산 시	80,254	9,751	6,871	8.6%	70%	6,954	△83	△1.2%
계 룡 시	30,918	3,850	4,614	14.9%	120%	4,421	193	4.4%
당 진 시	163,239	18,459	18,454	11.3%	100%	17,588	866	4.9%
금 산 군	48,113	3,948	3,608	7.5%	91%	3,293	315	9.6%
부 여 군	41,600	3,690	3,405	8.2%	92%	3,475	△70	△2.0%
서 천 군	40,410	3,500	2,901	7.2%	83%	3,371	△470	△13.9%
청 양 군	29,819	1,788	1,854	6.2%	104%	1,831	23	1.3%
홍 성 군	74,370	5,190	6,384	8.6%	123%	6,549	△165	△2.5%
예 산 군	69,000	3,812	5,118	7.4%	134%	5,055	63	1.2%
태 안 군	56,604	2,642	4,209	7.4%	159%	4,117	92	2.2%



▶ 본 정보지에 게재된 글과 자료는 일반적 정보와 아이디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문의 개별 사안은 구체적인 여러 사정에 의하여 각기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충청남도의회 공식 입장과 무관합니다.

· 본 정보지에 수록된 이번달 주제, 충청남도 및 교육청 주요 정책이슈, 세입징수 실적 등은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검토한 내용입니다.

· 또한, 정책동향은 정책 연구기관의 최신 자료를 수집·가공한 자료입니다. 정보지를 인용하시기 전에 원 출처를 확인하신 후 원문을 바탕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